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5. 5. 7.  
행정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년 4월 28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15년 5월 4일
- 다. 상정일자 : 제196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2015년 5월 7일)  
상정,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기획예산과장 조주연

###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 필요

### 나. 주요내용

- 1)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 변경(안 제1조)
- 2) 위원회 구성 (안 제2조)
- 3)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본조 신설(안 제2조의2)
- 4)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 3. 검토보고 (전문위원 김은모)

- 동(同)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지방재정법」이 2015. 1.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여 공시심의위원회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규정을 종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에서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을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 위원회 구성원 및 임기를 변경하여
  - 1) 현행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 2) 부위원장을 기획경제국장에서 당연직 기획경제국장, 감사담당관, 재무과장으로 하고
  - 3)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민간전문가 등을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으로 개정하고
- 민간 위원(공무원이 아닌 위원)임기는 현행 2년, 연임 가능 => 3년, 한차례만 연임 가능하도록 개정 함

구분	현행	개정안
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부구청장</li> <li>• 부위원장 : 기획경제국장</li> <li>•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민간전문가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원장 :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li> <li>• 당연직 : 기획경제국장, 감사담당관, 재무과장</li> <li>•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li> </ul>
위촉직 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년, 연임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년, 한 차례만 연임 가능</li> </ul>

안 제2조의2에서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대한 규정 신설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함.

- 검토의견으로는 동(同)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에 저촉됨이 없고, 2015.3.12.~ 4.1. 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절차상에 문제점은 없으며 그 동안 정비되지 않은 부정확한 용어 및 문구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음.
- 동(同)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을 공무원에서 제외하고 공무원 위원 수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3(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3명)을 기획경제국장, 감사담당관, 재무과장으로 명확하게 하였고,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에서 3년, 한차례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시민단체는 제외하여 민간전문가와 대학교수로 하여 민간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였으며,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위원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석을 못하도록 하였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종전의 ‘마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그대로 두어 지방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을 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번에 새로 구성되는 ‘마포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는 주민들에게 지방재정 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은 물론 심의 대상별 성격에 따라 상반기 예산안과 하반기 결산 등을 동(同)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앞으로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며 이번 조례안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